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133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조정훈・인요한・최수진

유상범 · 김대식 · 김용태

서지영 • 이인선 • 정성국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행 개 아 혂 정 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 교육부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 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을 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 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 을 할 수 있다. 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 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 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시36조에 따른다.